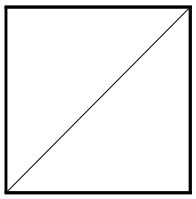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55호
의 결 연 월 일	2026. 4. 1. (제 6 차)

의결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이 억 원
제출 연월일	2026. 4. 1.

1. 의결주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해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정부부처간 금융교육 협력을 강화하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개선된 금융상품 설명서 적용범위 명확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을 통해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지명권자 추가(시행령 §28)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나. 설명서 맨 앞에 손실가능성 등을 요약하여 기재토록 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감독규정 §13①)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에 대해서도 개선된 설명서(요약설명서)를 적용하도록 개정

다. 과징금 부과기준에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 절사 근거 마련(감독규정 별표7)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 산정시 100만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비중요 규제)

라. 2026년도 제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6.3.26.) 심의필

마.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1.30. ~ 2026.3.11.) 기간 중 의견 조회 결과, 법제처로부터 일부 자구수정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

<별지 1>

대통령령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방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8.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국방부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2>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나목1)나) 중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으로”로 한다.

별표 7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5호 개정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설명서)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설명서) ①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5.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나. ---------- ---------- ---------- ---------- ---------- ----------

1) 투자성 상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생 략) 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한다)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 ---------- ---------- ---------- --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으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7] 과징금의 부과기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기타
< 신 설 >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금융소비자정책과
연 락 처	02-2100-2524